##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□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!□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더불어민주당 최영주 의원입니다.
- 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 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 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□ 본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
  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
   지정취소・면적조정・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
  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
   관광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.
- □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
  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
  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
  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.

- □ 이에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
   관광특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,
   상위법 정의에 따라
  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- 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  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
   관광산업의 변화에 대비하고,
   관광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
  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